####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16호 개정 1998. 4. 10 규칙 제132호 2003. 12. 16 규칙 제349호 2005. 10. 5 규칙 제417호 2005. 12. 31 규칙 제501호 2007. 12. 17 규칙 제553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2007. 12. 17〉
  -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을 엄중 문책하여야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이 나 기타 사회 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7〉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 문책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2005, 10, 5, 2007, 12, 17〉
-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사건
-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5. 10. 5, 2007. 12. 17〉
  -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장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05. 10. 5〉
  -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7〉
-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 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로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의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난에 그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 결서의 의결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 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기재한다.
- 제7조(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서에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2007. 12. 17〉
  - ③ 징계 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1998. 4. 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31 규칙 제5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2. 17 규칙 제5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1] 〈개정 2005. 12. 31, 2007. 12. 17〉

#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 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경 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의2.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별표 2] 〈신설 2007. 12. 17〉

#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징 계 기		기 준		
징 계 사 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고
1. 금품・향응수수						능동적으로
가.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수수한 경
1) 100만원 미만					0	우 1 단계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Ī ·	0		위로 징계
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			
4)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0				
5) 1,000만원 이상	0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0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0			
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	:			
4) 500만원 이상	0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0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0	ļ ·			
3) 300만원 이상	0		ļ ·			
2. 품위손상 등						비위의 도
가. 공금 등 유용・횡령						의 경중에
1) 500만원 이상			0			따라 가감
2) 500만원 미만	]	<u> </u>	<u> </u>	0		
나.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0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0	

		7	] 7	] フ	) {	<u> </u>	
징	계 사 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고
다. 음주운전							• 횟수산정에
2) 면허정지(0.059 3) 면허정지(0.059 4) 면허취소(0.109 5) 면허취소(0.109 6) 면허취소(0.109	% 이상) (2회) % 이상) (3회) 이 음주측정 거부		0				포함 문전 적발의 경 과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일 경우에는 1 단계 위로 징계)
10) 음주운전 교통 (음주정도에 미 11) 음주운전 사고 (음주정도에 미	다라 가감)		0	0		 	· 운전직 공 무원의 면 허취소는 "당연퇴직" 적용
라. 교통사고							·과실의 경
1) 교통사고 인명피해	피해자가 중상일 때 (6주 이상, 뇌 손상은 4주 이상 진단) 직접 가해하여 사망 직접 가해하여 사망한 때 지 아니하였으나 원인을 제공	l			0	0	· 교통사고 인 명피해 6주 미만은 "훈 계"(보험처 리 되 거 나
2)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물적피해 발생				0	-   0	상호 합의 하여「공소
3)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물적피해 발생		0	0			권없음」으 로 통보될 경우 불문)
마. 음주로 인한 품 1) 공무시간 중인 2) 그 밖의 공무/	경우				0_		비위의 정도 에 따라 가감
<ul> <li>바. 성행위 관련 변</li> <li>1) 강간, 강제추행</li> <li>2) 성매수</li> <li>3) 성희롱, 간통</li> </ul>			0	<u>.                                    </u>			미성년자의 경우 1단계 위로 징계

	7	] 7	1 7	7] {	<u>ス</u>	
징 계 사 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고
사.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0		·비위의 도
아.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0		백년 기술
2) 강도 등		0				·기소 이외
자. 도박 등 사행행위						약식기소, 기소유예,
1) 상습적인 경우				0		공소권 없음
2) 일시적인 경우					0	처분된 경우 "훈계"
3.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0	또는 비위의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0	경중에 따라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0	가감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0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 의 무상 임차				0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0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						
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 품의 수수					0	
아.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0	
4.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0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 (월 3회이상)					0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0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이석)				0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0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0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0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고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도
가. 중요 비밀누설			0			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경미한 기밀누설					0	1 1 1 1 1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ㆍ변조		0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0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0	

[별표 3]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 당 자)	직 상 감 독 자	차 상 감 독 자	최 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4	3	2	1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사항	3	1	2	4
· 단순, 반복 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sup>※ 1, 2, 3, 4</sup>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 [별표 4]

### 징계양정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 문 (경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1998. 4. 10〉